

이 보도자료는 2022. 9. 7. (수) 17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

인권보호관/전문공보관 김원호
전화 032-320-4338

보도자료

2022. 9. 7. (수)

제목

자원봉사자 21명에게 8,7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대신 예비후보자 구속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- ☑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0조 제2항)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● 9. 7. (수)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김해중)는 공소시효만료일 1개월 전 중앙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여 직접 수사한 결과,

- 선거사무소 내 자원봉사자 21명에게 합계 8,716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, 선거 운동을 도와주면 사업에 약 1,30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정치자금 약 1억 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 A○○(21. 10. 15. 예비후보자 등록, 22. 2. 14. 후보자등록 포기)를 구속 기소하고,
- 선관위에서 고발한 관련자 4명 외에 회계책임자 F○○, 회계실무자 G○○ 및 자원 봉사자 18명을 인지하여, 그 중 가담정도 중한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 나머지 6명은 기소유예,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은 혐의없음 처분함

1 주요 수사경과

- 8. 5. 대검찰청, 중앙선관위 고발장 접수(8. 8. 부천지청 이송)
※ 예비후보자 A○○ 주민등록상 주소지(김포시) 관할
- 8. 9 ~ 9. 1. 사건관계인 총 49명 검찰 직접 조사
- 8. 26. A○○ 구속영장 청구, 8. 30. 구속영장 발부

- 9. 2. 회계실무자 GOO(비회계책임자가 미신고 계좌 이용, 정치자금 2억원 지출), 회계책임자 FOO(미신고계좌 이용, 정치자금 2,511만원 지출) 인지, 금품을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18명 인지
- 9. 7. AOO 구속 기소, 관련자 17명 불구속 기소
 - 가담정도 경미한 자원봉사자 6명은 기소유예,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은 혐의없음

2 피고인 및 처분 내용

순번	피고인	직위	죄명	처분
1	AOO(61세)	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	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	'22. 9. 7. 구속 기소
2	BOO(50세)	선거사무소 단장	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	'22. 9. 7. 불구속 기소
3	COO(50세)	선거사무소 전략기획팀장	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	"
4	DOO(66세)	선거사무소 사무장	정치자금법위반	"
5	EOO(69세)	선거사무소 고문 (AOO의 친형)	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	"
6	FOO(64세)	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	정치자금법위반	"
7	GOO(44세)	선거사무소 회계실무자	정치자금법위반	"
8	HOO(39세) 외 10명	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	공직선거법위반	"

3

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의 요지
1	AOO, BOO, COO	'21. 12. 10. ~ '22. 7. 8. 자원봉사자 20명에게 합계 8,516만원 제공, 비회계책임자가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사용하여 지출 [공직선거법위반, 정치자금법위반]
2	AOO	'22. 3. 24. 자원봉사자인 EOO에게 200만원 제공 [공직선거법위반]
3		'21. 12. 3. BOO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향후 1억유로(약 1,300억원)를 투자해주겠다고 금품제공 의사표시 [공직선거법위반]
4		'21. 12. 1. ~ '22. 1. 27. BOO로부터 선거자금 약 1억 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자상당액 406만원 수수 [정치자금법위반]
5	AOO, DOO, FOO, GOO	'21. 10. 16. ~ '21. 11. 17.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사용하여 선거사무소 집기구입비 등 합계 2,511만원 지출 [정치자금법위반]
6	AOO, DOO, EOO, GOO	'21. 11. 15. ~ '21. 11. 26. 비회계책임자가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사용하여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 2억원 지출 [정치자금법위반]
7	AOO, BOO	'21. 12. 1. ~ '22. 1. 27. 비회계책임자가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사용하여 현수막 제작비 등 합계 약 2,000만원 지출 [정치자금법위반]
8	BOO	'21. 12. 3. AOO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향후 1억유로(약 1,300억원)를 투자해주겠다는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받고 승낙 [공직선거법위반]
9		'21. 12. 1. ~ '22. 1. 27. AOO에게 선거자금 약 1억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어 이자상당액 406만원 기부 [정치자금법위반]
10	HOO 외 10명	'21. 12. 10. ~ '22. 7. 8. 자원봉사자임에도 각 400만원 내지 750만원을 수령 [공직선거법위반]
11	EOO	'22. 3. 24. 자원봉사자임에도 AOO로부터 200만원을 수령 [공직선거법위반]